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41
----------	-----

제출년월일 : 2009. 12.
제출자 : 중구청장

1. 개정이유

- 가. 국, 과 명칭을 구민들이 부르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명칭으로 개정
- 나. 창의혁신 사무 소관부서 변경

2. 내용

- 가. “주민생활지원국”을 “생활지원국”으로 변경(안 제3조)
- 나. 총무국에 두는 과의 명칭 및 소관사무 일부 변경(안 제5조)
 - 지방세과 ⇒ 세무과
 - “혁신분권” 소관부서 변경(자치행정과 ⇒ 기획감사실)
- 다. 주민생활지원국에 두는 과의 명칭 변경(안 제6조)
 - 주민생활지원과 ⇒ 생활지원과
- 라. 건설도시국에 두는 과의 명칭 변경(안 제7조)
 - 재난안전관리과 ⇒ 재난관리과

3. 근거법령

- 가. 「지방자치법」 제112조
-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입법예고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주민생활지원국”을 “생활지원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지방세과”를 “세무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혁신분권”을 삭제한다.

제6조의 제목 “주민생활지원국에 두는 과”를 “생활지원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을 “생활지원국”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생활지원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관리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실과란 중 “지방세과”를 “세무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생활지원과”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1호 중 “지방세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한다.

③ 「울산광역시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지방세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한다.

④ 「울산광역시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⑤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⑥ 「울산광역시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용관 : 생활지원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가. 생활지원과장(기초생활보장계정)

⑦ 「울산광역시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⑧ 「울산광역시중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⑨ 「울산광역시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제11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⑩ 「울산광역시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총무국·<u>주민생활지원국</u>·건설도시국을 둔다.</p>	<p>제3조(국의 설치) ----- ----- 생활지원국----- -----.</p>
<p>제5조(총무국에 두는 과) ①총무국에 총무과·자치행정과·문화체육과·지방세과 및 민원지적과를 둔다. ②(생략) 1. (생략) 2. 자치행정, 주민자치센터운영지원 민간협력, <u>혁신분권</u>, 공보행정 평생학습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 6. (생략)</p>	<p>제5조(총무국에 두는 과) ① ----- ----- 세무과----- -----. ②(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삭 제> ----- 3. ~ 6. (현행과 같음)</p>
<p>제6조(주민생활지원국에 두는 과) ①주민생활지원국에 <u>주민생활지원과</u>·사회복지과·지역경제과·환경위생과 및 환경미화를 둔다. ②주민생활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생략)</p>	<p>제6조(생활지원국에 두는 과) ① <u>생활지원국</u>에 생활지원과----- ----- -----. ②<u>생활지원국장</u>----- -----. 1.~ 6.(현행과 같음)</p>
<p>제7조(건설도시국에 두는 과) ①건설도시국에 건설과·<u>재난안전관리과</u>·도시과·교통행정과·건축허가과·녹지공원과 및 시설지원단을 둔다. ②(생략)</p>	<p>제7조(건설도시국에 두는 과) ①--- -----<u>재난관리과</u> ----- -----. ②(현행과 같음)</p>

관 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의안심사보고서

(의안번호 741)

1. 의안명 :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9. 12. 2(수)
- 나. 제출자 : 중구청장
- 다. 위원회 회부 : 2009. 12. 3(목)
- 라. 위원회 상정 : 2009. 12. 10(목)

3.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기획실장)

- 국·과 명칭을 부르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명칭으로 개정하고
- 창의혁신 사무 소관부서를 변경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가. "주민생활지원국"을 "생활지원국"으로 변경(안 제3조)
- 나. 총무국에 두는 과의 명칭 및 소관사무 일부 변경(안 제5조)
 - 지방세과 ⇒ 세무과
 - "혁신분권"업무 소관부서 변경(자치행정과 ⇒ 기획감사실)
- 다. 주민생활지원국에 두는 과의 명칭 변경(안 제6조)
 - 주민생활지원과 ⇒ 생활지원과
- 라. 건설도시국에 두는 과의 명칭 변경(안 제7조)
 - 재난안전관리과 ⇒ 재난관리과

5. 참고사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6. 검토보고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